

의안번호	2214915
의 퇴 인	김정호의원
회 답 일	2026.2.11.
추계번호	25B66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35조의2 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 ¹⁾ 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기기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해당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이하 “적합성 평가”라 한다)를 받도록 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감리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증서 또는 적합성 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함(제3항) 1.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대상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종류 2.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기준 및 절차 3. 유효기간 4.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결과의 표시 방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5조의2 신설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2. 상세사유

-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또는 동등한 성능의 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증·적합성 평가 시행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재정지원이 수반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안에 따라 별도의 기기 인증·적합성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각 구성 기기별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기술검토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런데 인증 및 적합성 평가 대상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종류, 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 기준 및 절차, 유효기간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부과 여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기술검토 비용 및 인증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다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운영 중인 건물 단위 인증제도인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

[참고자료] 스마트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²⁾

□ 개요

-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 되도록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및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구내정보통신 설비의 고도화를 촉진시키고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함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
 - －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제공·이용될 수 있도록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운용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고도화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제2조제2항제14호의 업무시설 또는 준주택오피스텔(「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6호)을 대상으로 함
- 단,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는 업무시설은 제외함

□ 인증등급 구분 및 표시

- 등급 구분
 - －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 특등급, 1등급, 2등급
 - －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 특등급, 1등급, 2등급

2)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시험인증본부 <https://www.bica.or.kr/> 2025.2.4. 검색

□ 인증 심사수수료

구분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비고
	공동주택·오피스텔	업무시설		
예비인증	세대당 3,180원	50원/㎡	세대당 550원	세대의 전용 면적이 60㎡ 미만인 경우 25%할인
	※ 최소 심사수수료 281,000원		※ 최소 심사수수료 205,000원	
본인증	특등급 세대당 11,190원	110원/㎡	특등급 세대당 950원	
			1등급 세대당 940원	
	1등급 이하 세대당 7,290원		2등급 세대당 900원	
	※ 최소 심사수수료 440,000원		※ 최소 심사수수료 264,000원	
보안점검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사전점검 (보안점검성적서)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보안점검 가이드 참고	
		현장점검 (보안점검결과서)	세대당 3,000원	

자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보통신시험인증본부 <https://www.bica.or.kr/>